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 46길 37 [http://www.kma.org]/ 전화(02)6350-6560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백영기 [6574] / 보험급여팀장 고영옥 [6572] / 팀원 이승아 [6560] / E-mail: kma6571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3-7157호
시행일자 2025. 9. 29.
수 신 수신처 참조
참 조
제 목 건강보험 고시 등 안내 (2025. 9. 22. ~ 2025. 9. 28.)

1.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등을 비롯한 건강보험 관련 주요 안내사항을 의협 홈페이지(건강보험 고시 안내)에 게재하고 매주 단위로 게시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.

2. 이에, 2025년 9월 22일 ~ 9월 28일까지 「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(www.kma.org) > 공지·뉴스 > 건강보험 고시 안내」에 게시된 고시 관련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, 상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반드시 상시 확인하여 주시고, 귀 회 소속 회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1	2025.9.24.	복지부 고시 제2025-167호	「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, 심사청구서·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」 일부개정 안내 ○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(약제)」고시 개정에 따라 고가의약품 급여관리 유형 관련 특정내역 개정(현행 6개 약제 => 7개 약제로, 1개 약제(빌페이캡슐) 추가) ○시행일: 2025.10.1.
2	2025.9.24.	복지부 고시 제2025-166호	「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」일부개정 고시 안내 ○별표1의 별지1, 별지2, 별지3에 기재된 약제 신설 등 ○시행일 : 2025.10.1. (※단,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일이 다르므로 게시물 내 첨부파일 참고)
3	2025.9.24.	고시 아님	2025년 심사 재점검 항목 및 기준 안내(신규 2항목 추가) ○장애인 치과 가산 점검, 눈의 계측검사 산정횟수 점검 등
4	2025.9.25.	복지부 고시 제2025-168호	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고시 일부개정 ○혁신의료기술 요양급여 항목 신설(비급여 임시등재 2건) - 전산화단층촬영 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두개내출혈 진단 보고, 호흡 재활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호흡 재활 운동 치료 ○시행일: 2025.10.1.
5	2025.9.26.	복지부 고시 제2025-164호	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 일부개정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'968. 혈관내 미세축 심실 보조장치를 이용한 기계적 순환보조' 신설 등 ○시행일: 2025.9.23.(고시 발령일)

연번	안내 일자	고시 번호	제목 및 주요내용
6	2025.9.26.	복지부 고시 제2025-165호	「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」 일부개정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'11.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감시' 내용 일부 변경 등 ○시행일: 2025.9.23.(고시 발령일)
7	2025.9.26.	복지부 고시 제2025-169호	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○총 10항목(신설2, 변경8) 개정 - 간장질환용제인 'Odevixibat 경구제(품명: 빌베이캡슐 200마이크로그램 등)'의 급여기준 확대 등 ○시행일: 2025.10.1.
8	2025.9.26.	고시 아님	(재공지 질의응답 수정) [약제](콜린알포세레이트) 집행정지 해제 (고시 제2020-183호)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안내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질의응답 내용 수정(9/24 수정) : 선별급여에 해당되는 적응증 청구방법 관련(연번1) - 입원명세서 대상 시행일인 '25.9.21.기준으로 적응증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지는 경우 변경일 기재
9	2025.9.26.	심평원 공고 제2025-212호	「심사지침」신설 및 개정 안내 (※산하단체 공문 별도 안내) ○총 2항목(「치핵수술시 수가 산정 방법」에서 만성 치열의 인정기준 신설 등) ○시행일: 2025.10.1. 진료분부터

※ 건강보험 고시 안내(URL) : https://www.kma.org/notice/sub16.asp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